

[학칙 개정(안)]

가. 제안이유

- 1) 교육부 정책과 대학의 기능확대의 일환으로 대학의 창업에 관한 업무를 구체화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됨
- 2) 현재 취업지원처의 업무기능에 창업업무를 관장하도록 역할을 부여 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창업 관련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적 지원을 하도록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취업지원처의 부서 명칭을 취창업지원처로 변경함
- 2) 취업지원처장을 취창업지원처장으로 변경함

다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학칙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7조(조직) ①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, 기획조정처, 교무처, 입학관리처, 학생복지처, 대외협력처, 국제교류처, 취업지원처, 총무처, 산학협력단, 총장직속기구로 비서실, 평가관리실 및 특별사업기구를 두며,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9. (생 략) 10. 취업지원처에는 취업지원팀을 둔다. 11. ~ 13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 	<p>제7조(조직) ① ----- ----- 취창업지원처,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취창업지원처----- 취창업지원팀----- 11. ~ 1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0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 ① 우리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생 략) 3. 취업지원처에는 취업지원센터를 둔다. 4. ~ 8. (생 략) ② (생 략) 	<p>제80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취창업지원처----- 4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	<p>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